
산업재산권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연구

2022. 8.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재산권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26일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김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구위원)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산업재산권법령과 규제	2
I. 기초사실	2
II. 산업재산권법령 내 규제현황	5
1. 특허법	6
2. 실용신안법	19
3. 디자인보호법	20
4. 상표법	27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4
6. 발명진흥법	44
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6
제3장 산업재산권 법령 내 규제 발굴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58
I. 진입규제 사항 검토	58
1. 진입규제 관련 규정	59
2. 진입규제 관련 개선방안 검토	68
3.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79
II. 특례 사항 검토	89
1. 우수기관 선정 관련	89
2. 우선심사/신속심판 관련	92
3.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100
III. 혁신창출 관련 사항 검토	102

제4장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개념 확대	109
I. 서론	109
II. 특허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110
III. 실용신안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113
IV. 디자인보호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114
V. 상표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118
 [참고문헌]	 123

제1장 연구의 필요성

2022년 새 정부 들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유연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사적영역의 사적행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한해 규제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는 과도한 사전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발달과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이에 특허청 소관 법령 내에서도 시장진입, 지원 대상 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를 살펴 고, 이 중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타당한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단 포지티브 규제를 무조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규제완화가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영역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도 있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생명, 안전, 환경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지되는 항목을 만들 경우 금지항목의 해석에 있어 명확성이 중요하다.¹⁾

1) 권오상·노창희·이수연·이순환, 「방송통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8, 25면.

제2장 산업재산권법령과 규제

I. 기초사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²⁾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표 1] 행정규제의 범위 등(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은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

이에 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그 내용을 알기 쉬워야 하므로, 국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제등록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 당해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⁴⁾

2)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3)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4)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better.go.kr/fz/stats/RefRgst.jsp>>

한편 법령상 존재하는 규제는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②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데,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규제이기 때문이다.⁵⁾

네거티브 규제는 다시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의미하며,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만으로 정의하면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규제유형은 매우 제한될 수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혁신제도를 포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방식의 유용성 극대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리스트 방식 외에도,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 분류, 사후 평가, 관리 등 유연한 입법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구분	내용
네거티브 리스트화	금지사항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허용
개념정의 확대	개념이나 요건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규정
분류체계 유연화	분류 기준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규정
사후평가·관리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 의무를 부과

[표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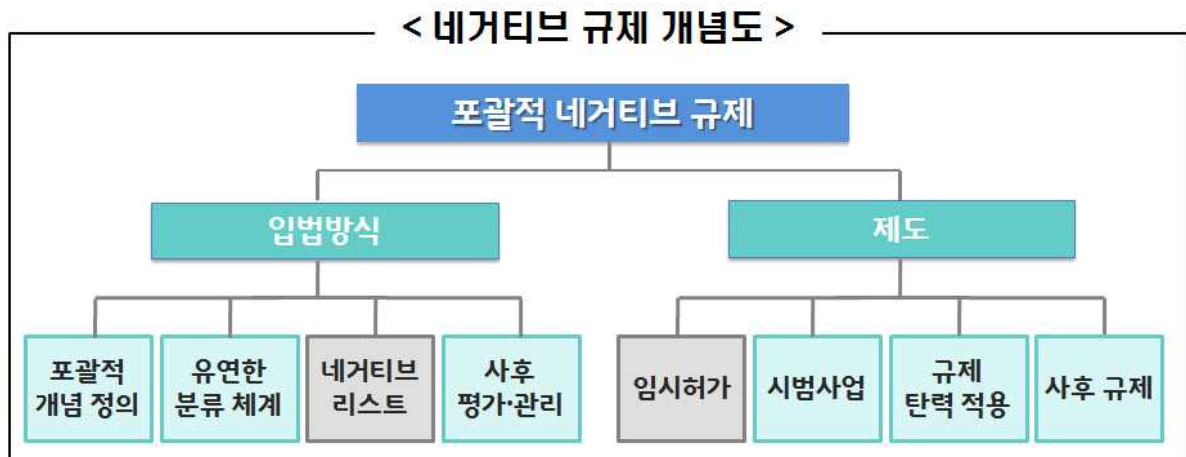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규제 입법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혁방식을 의미하나, 규제 입법방식의 변화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효과달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데, 해당 분야의 서비스와 상품의 등장 속도와 기술의 변화속도는 입법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입법방식의 변화 외에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에 혁신 제도(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필요

5) 해당 구분은 무역규제 분야에서 통용되어 온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의 구분에서 유래되었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수출입 허용 품목만을 명시하고,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리스트는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만을 명시하고, 명시된 품목 이외에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1면.

6)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1면.

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혁신 제도는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임시허가, 시범사업, 규제 탄력적용, 사후규제로 구성된다.⁷⁾

이와 같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⁸⁾



[그림 1]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은 크게, 입법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구현하는 유형과, 신산업·신기술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을 각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유연한 입법방식의 일환으로 정의규정에 요건과 기준이 결합되어 있거나 기능과 종류를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어,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에 기존 법령에 요건과 기준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규정은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고, 개념 정의에 일부 품목을 나열하고 있는 규정은 관련 신산업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유연한 입법방식의 일환으로서 현재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제품·서비스 유형 분류가 기존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신서비스 시장의 출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존 분류체계 외의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분류 체계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의 신설이 있다. 이에 신기술 기반의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카테고리를 신설하거나, 관련 협의체

7)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2면.

8) 그림의 출처는,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2면.

9) 이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4면 이하 참조하여 작성함.

및 관리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유연한 입법방식의 일환으로 금지사항을 나열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협의의 네거티브, 즉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유연한 입법방식의 일환으로, 시장 출시 전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의 자율성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저해, 사전심의와 검사방식에서 자율심의와 사후평가로의 전환을 하는 사후 평가 및 관리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혁신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으로, 일명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의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기간, 규모 등이 제한된 시장 환경에서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 신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① 신서비스 제품의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사업(실증사업)의 실시, ② 관련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우선 시장출시를 위한 임시허가, ③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④ 시범사업 등의 진행 사항 및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사후규제의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II. 산업재산권법령 내 규제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규제정보포털(<http://better.go.kr>)에서는 각 소관부처별 규제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목록 중에서 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목적이 더는 유효하지 않거나 비규제적 수단(자율규제, 인센티브)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할 수 있으며, 규제 집행 시의 문제가 있거나, 피규제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개선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 경우,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규제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규정으로서 국내에서 임의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나 규제의 성격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 다수 존재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1)**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업원 등이 해당 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기관 등이 포기하였을 때 종업원 등 발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유망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술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본 규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공공안전질서 유지 목적 등 공익이 현저히 사익에 우선되는 경우, 독립된 기관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2020)**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인력요건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책임연구원 2명 이상 상시고용하도록 정하고, 시설요건으로 전용 업무공간,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도록 정한 것은 증가하는 특허기술의 조사·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력요건 및 시설요건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에 적정성이 있어, 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표 3] 특허청 소관법령 내 기존 규제 심사사례

현재 규제정보포털(<http://better.go.kr>) 내에 게시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소관법령 내 규제현황은 다음과 같다.¹⁰⁾

1. 특허법

가. 기간의 연장

특허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심판청구 기간(결정등록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을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교통 불편지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간과 횟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에 위임

10) 다만 이하의 분석에서 산업재산권 소관법령 중 「변리사법」은 검토범위에서 제외한다.

하고 있다.¹¹⁾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교통 불편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한 추가 연장횟수는 1회, 그 기간은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기간의 지정) ① 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6. 22., 1998. 2. 23., 1999. 7. 1., 2001. 6. 30., 2003. 5. 17., 2007. 6. 29., 2014. 12. 30.>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7. 29., 2017. 2. 28.>

⑤ 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표 4] 특허법 상 규제_기간의 연장 관련 법령

11) 규제사무명 : 지정 기간의 연장 승인(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12) 규제사무명 : 지정 기간의 연장 승인(공포일 2017. 2. 28./시행일 2017. 3. 1.)

나.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제출인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필요로 한다.¹³⁾

[특허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6. 10.>

[표 5] 특허법 상 규제_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관련 법령

다. 외국어특허출원 등

외국어(영어)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1년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¹⁴⁾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13) 규제사무명 :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14) 규제사무명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29.>

[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0. 4., 2017. 2. 28.>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2. 28.>

[표 6] 특허법 상 규제_외국어특허출원 등

라. 전문기관의 등록 등

특허출원 시 필요할 경우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의뢰를 위한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 의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¹⁵⁾

관련하여 일반적인 전문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등록을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의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는 i)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부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확보, ii)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부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 및 조직 확보, iii) 변리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중인 변리사의 임직원 겸직 금지,¹⁵⁾ iv)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부여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보유하여야 한다.¹⁷⁾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i)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조사,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WIPO 지정 PCT 최소문헌), 특허분류부여의 사업에 필요한 자체 DB 보유 또는 유사 DB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한 환경 및 전산장비의 보유, ii)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구비, iii) 기술분야별 조사가능 조사원 보유,¹⁸⁾ iv) 조사원, 분류원은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으로 운영할 것, v) 임직원 중 변리업을 수행하는 타 기관 임직원 겸직 혹은 등록변리사가 아닐 것, vi)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를 점검하는 보안현황 조사표의 점검항목별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을 규정한다.¹⁹⁾

한편 미생물의 기탁, 분양 전문기관의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다음의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등록 기준 및 등록·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미생물의 기탁, 분양 전문기관의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i)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ii)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 iii)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 보유를 규정한다.²⁰⁾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미생물 기탁기관 등록을 위한 기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i) 등록 신청기관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계속 존재할 것, ii) 특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할 것,²¹⁾ iii)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²²⁾ vi)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

15)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공포일 2018. 4. 17./시행일 2018. 7. 18.)

16) 단, 휴업 중인 변리사의 경우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다.

17)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 등록 요건(공포일 2017. 1. 10./시행일 2017. 1. 10.)

1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조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신규분류는 총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며, 기술분야별 분류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문헌분류는 기술분야별 분류원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9)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의 등록요건(공포일 2014. 3. 5./시행일 2014. 3. 10.)

20) 규제사무명 :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기준(공포일 2014.12.30./시행일 2015.1.1.)

21)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는 ① 미생물 분야 관련 학사 이상 학위 보유 또는 미생물 수탁, 분양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② 기탁 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 계획광고에서 정하는 미생물 종류에 따른 업무분야별 1명 이상 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할 것,²³⁾ v) 수탁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 vi) 기탁기관 의무의 성실 이행 및 관련 업무의 공평·객관적 수행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⁴⁾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9. 28., 2011. 2. 22., 2014. 12. 30., 2017. 1. 10., 2017. 5. 29.>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22) 자격요건으로는 ① 수탁 미생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존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전문장비 확보, ② 화재, 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한 화재대비안전관리체계 및 비상전원공급체계확보, ③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23) 미생물 수탁 및 수탁증 발행 업무, 미생물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발행업무 및 미생물 보관 및 분양업무

24) 규제사무명 : 미생물기탁기관 등록기준(공포일 2015. 12. 01./시행일 2015. 12. 01.), 단 해당 규제사무는 재검토형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1. 1. 1. ~ 2023. 12. 31. 이다.

②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조사·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 1. 31., 2006. 9. 28., 2014. 12. 30., 2017. 5. 29.>

[본조신설 1992. 10. 27.]

[제목개정 2014. 12. 30., 2017. 5. 29.]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4(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 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29.>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는 것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5. 29.>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고 있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할 것

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특허문헌 검색 등 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라. 조사원·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원·분류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및 신규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 특허청장으로부터 국내기탁기관으로 등록을 받거나,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위취득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

가. 미생물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 보유자 또는 미생물의 수탁, 분양 등과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공고에서 정하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업무분야별로 1명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가. 수탁 미생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존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전문장비를 확보할 것

나. 화재, 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한 화재대비안전관리체계 및 비상전원공급체계를 확보할 것

다.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미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미생물 수탁 및 수탁증 발행 업무

나. 미생물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발행 업무

다. 미생물 보관 업무

라. 미생물 분양 업무

5. 수탁 미생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6. 이 고시에 따른 기탁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표 기] 특허법 상 규제_전문기관의 등록 등

마.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전문기관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때 등록 취소의 사유로는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②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한 경우이다.²⁵⁾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수적 등록 취소사유이다. ②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③ 전문기관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한 경우, i)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의 경우 등록취소 사유이며, ii) 미생물기탁기관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²⁶⁾

구체적 처분기준으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기탁기관의 경우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③ 전문기관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도용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국제기탁기관인 경우에는 부다페스트조약 제8조에 따른 보증선언의 취하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²⁷⁾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③ 전문기관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도용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²⁸⁾

또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도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하게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선행기술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도용 및 사업범위를 넘

25)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26)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공포일 2014. 12. 30./시행일 2015. 1. 1.)

27) 규제사무명 : 미생물기탁기관의 처분 기준(공포일 2017. 8. 01.), 해당 규제사무는 재검토형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1. 1. 1. ~ 2023. 12. 31. 이다.

28)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 등등록취소 등(공포일 2017. 8. 1.)

어선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 출원공개 및 등록공개되지 않은 특실출원·국제출원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특허문헌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²⁹⁾

[특허법]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6. 12. 2.,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기탁기관 등록의 취소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취하) ① 특허청장은 기탁기관이 제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국내기탁기관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8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탁기관에 대해서는 부다페스트조약 제8조에 따라 보증 선언의 취하를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기탁된 미생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국내기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기탁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국제기탁기관은 조약 제8조2항 및 조약 규칙 제4.2조에 따른 보증 선언의 취하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기탁기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규칙 제36조의3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업무 및 기술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특허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29) 규제사무명 : 특실심사지원업무 관련 비밀준수(공포일 2014. 03. 05./시행일 2014. 3. 10.)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 무실 또는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

[표 8] 특허법 상 규제_전문기관 등록취소 등

바. 심판비용액 청구 중 대리인 보수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거짓, 부정, 고의, 중과실 등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패소자 부담의 예외의 규정을 적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에 한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³⁰⁾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비용계산의 기준)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특허법 제83조, 디자인보호법 제86호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 받기 전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 범위 이내에서 변리사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일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표 9] 특허법 상 규제_심판비용액 청구 중 대리인 보수 규정

사. 국제출원 시 사용언어의 제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을 특정 언어로 작성하여

30) 규제사무명 : 심판비용액 청구 중 대리인 보수 규정(공포일 2022. 1. 25./시행일 2022. 1. 25.)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특정언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³¹⁾ 이에 시행규칙에 위임한 특정 언어로는 국어, 영문 또는 일본어로 서류를 작성하여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

[특허법]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언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 2. 25., 2013. 3. 23.>

[표 10] 특허법 상 규제_국제출원의 사용언어

아. 서류의 열람

특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 등을 신청하여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대상 서류로는 ①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 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②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 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따른 심판 관련 서류, ③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이다.³³⁾

31) 규제사무명 : 국제출원 시 사용언어 제한(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32) 규제사무명 : 국제출원 시 사용언어의 명확화(공포일 2014. 12. 30./시행일 2015. 1. 1.)

33) 규제사무명 : 서류 열람 등의 제한(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표 11] 특허법 상 규제_서류의 열람

자. 허위표시의 금지

특허와 무관한 물품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 중이거나 받은 것으로 허위 또는 혼동을 유발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지 사항으로는 ① 특허된 것이 또는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한 것 등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 ② 허위 표시 물품의 양도·대여·전시 또는 이를 위한 광고·간판 표시 등의 행위, ③ 특허된 것 또는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을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³⁴⁾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34) 규제사무명 : 허위표시의 금지(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표 12] 특허법 상 규제_허위표시의 금지

2. 실용신안법

가.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기간 제한 등

등록이 지연되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³⁵⁾

[실용신안법]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표 13] 실용신안법 상 규제_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나. 증명발급의 특허법 준용

35) 규제사무명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기간 제한 등(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특허법 제2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에서도 이를 준용한다.³⁶⁾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법] 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표 14] 실용신안법 상 규제_서류의 열람

3. 디자인보호법

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업무 의뢰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을 위한 그 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³⁷⁾

우선 디자인전문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정신청서에 정해진 기준³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과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및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

36) 규제사무명 : 실용신안법상 증명발급의 특허법 준용(공포일 2014. 6. 11./시행일 2015. 1. 1.)

37) 규제사무명 :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공포일 2013. 5. 28./시행일 2014. 7. 1.)

38) 해당 기준으로는 ① 선행 디자인 조사, 물품 분류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선행디자인 조사, 물품 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③ 선행디자인 조사, 물품 분류 등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보유할 것, . 임직원 중 변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시」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³⁹⁾

관련하여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디자인 공지기관 지정 기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① 디자인 공지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관련 보안 시스템을 보유할 것, ② 디자인 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③ 일반인이 신청된 공지디자인을 쉽게 열람 가능할 수 있는 장소나 공중통신망을 보유할 것이다.⁴⁰⁾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도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①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 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②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보유할 것,⁴¹⁾ ③ 임직원 중 변리업을 수행하는 타 기관 임직원 겸직 혹은 등록 변리사가 아닐 것, ④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체계를 점검하는 보아현황 조사표의 점검항목별로 ‘양호’ 또는 ‘보통’ 을 획득할 것이다.⁴²⁾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39) 규제사무명 :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공포일 2014. 12. 30./시행일 2015. 1. 1.)

40) 규제사무명 : 디자인 공지 전문기관의 지정(공포일 2013. 6. 25./시행일 2013. 7. 1.)

41) 세부적으로, i)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ii) 조사원은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수행하며 전용사무실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iii) 조사원은 고시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2)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의 지정 등(공포일 2014. 10. 1./시행일 2014. 10. 1.)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공지기관의 지정요건) 공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디자인 공지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보안시스템 2. 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3. 일반 공중이 신청된 공지디자인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공중 통신망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지원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전담 조직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 조사원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 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표 15] 디자인보호법 상 규제_전문기관의 지정

나.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디자인 전문기관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산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⁴³⁾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필수적 지정 취소 사유이다. ② 전문기관 지정

43) 규제사무명 :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공포일 2013. 5. 28./시행일 2014. 7. 1.)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경고,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다.⁴⁴⁾

관련하여 전문기관 별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디자인 공지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필수적 지정취소 사유이다. ② 필요장비를 미보유 하거나 인력 및 조직을 미확보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⁴⁵⁾ ③ 업무처리기준 또는 보안체계 미확보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다.⁴⁶⁾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요건으로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⁴⁷⁾

[디자인보호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공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공지기관이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취소가 되기 이전에 신청된 공지디자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규칙 제56조 별표6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

44) 규제사무명 :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공포일 2014. 12. 31./시행일 2015. 1. 1.)

45) 단 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46) 규제사무명 : 디자인 공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공포일 2013. 6. 25./시행일 2013. 7. 1.)

47) 규제사무명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공포일 2014. 10. 1./시행일 2014. 10. 1.)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표 16] 디자인보호법 상 규제_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다. 국제 디자인 출원의 제한

헤이그 협정에 따라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WIPO)에 국제출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⁸⁾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국제출원서 등의 서류 제출 시, 영어만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⁹⁾

[디자인보호법]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 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

48) 규제사무명 : 국제 디자인 출원의 제한(공포일 2013. 5. 28./시행일 2014. 7. 1.)

49) 규제사무명 : 국제 디자인 출원의 제한(공포일 2014. 12. 31./시행일 2015. 1. 1.), 단 해당 규제사무의 경우 재검토형 일몰규정으로서 그 일몰기간이 2019. 1. 1. ~ 2021. 12. 31.로 기종료되었다.

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30.>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표 17] 디자인보호법 상 규제_국제출원의 절차

라. 서류의 열람 등

디자인의 출원, 등록 및 심판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 등을 신청하여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로는 ① 디자인권 설정등록 또는 출원 공개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②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이다.⁵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8] 디자인보호법 상 규제_서류의 열람

마. 디자인 허위표시의 금지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등록출원과 관련하여 허위표시 등 지정된 행위를 금지하도록 열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금지행위로는 ① 사실과 다르게 물품, 용기 및 포장에 디자인등록 혹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혼동하기 쉽게 표시하는 행위, ② 디자인등록 혹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것처럼 표시를 한 후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및 ③ 디자인등록 혹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의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혼동하기 쉽게 표시하는 행위이다.⁵¹⁾

[디자인보호법]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

50) 규제사무명 : 디자인 출원, 등록 및 심판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 제한(공포일 2013. 5. 28./시행일 2014. 7. 1.)

51) 규제사무명 : 디자인 관련 허위표시 금지(공포일 2013. 5. 28./시행일 2014. 7. 1.)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표 19] 디자인보호법 상 규제_허위표시의 금지

4. 상표법

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에서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오인 및 혼동 가능성, 국가의 국기, 국제기구의 기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등 공익과 사익의 보호를 위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1호에서 21호에 걸쳐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⁵²⁾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52) 규제사무명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공포일 2016. 2. 29./시행일 2016. 9.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20] 상표법 상 규제_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나.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상표의 검색, 분류 등의 업무 의뢰를 위한 전문기관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⁵³⁾

이에 상표법 시행령에서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기준을⁵⁴⁾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과 전문기관 등록·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⁵⁵⁾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상표조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전담인력의 요건으로서 조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에는 분류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⁶⁾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8.>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 8.>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1. 8.>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3)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의 등록 등(공포일 2019. 1. 8./시행일 2019. 7. 9.)

54) 상표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① 상표검색 및 분류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상표검색 및 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③ 상표검색 및 분류 등 업무 수행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보유할 것, , 상표검색 및 분류 등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 보안체계를 보유할 것, ' 거짓·부정으로 지정받은 것이 확인되어 등록 취소된 법인이거나 취소 당시 법인에서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인 경우는 전문기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5)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의 등록(공포일 2019. 7. 9./시행일 2019. 6. 11.)

56) 규제사무명 : 상표조사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전담인력 요건(공포일 2021. 11. 30./시행일 2021. 11. 30.)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다만,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원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원이 3명 이상일 것 라. 조사원·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표 21] 상표법 상 규제_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다.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상표전문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⁵⁷⁾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③ 업무처리기준 또는 보안체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

57) 규제사무명 :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공포일 2019. 1. 8./시행일 2019. 7. 9.)

라 경고 또는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및 등록취소가 가능하다.⁵⁸⁾

관련하여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시행규칙과 동일한 취지에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⁵⁹⁾

[상표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 8.]

[상표법 시행규칙]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6. 14.]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규칙 제48조 별표2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표 22] 상표법 상 규제_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등

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불복의 제한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각각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⁰⁾

[상표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8) 규제사무명 : 전문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공포일 2019. 7. 9./시행일 2019. 6. 14.)

59) 규제사무명 :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공포일 2019. 11. 28./시행일 2019. 11. 28.)

60) 규제사무명: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불복의 제한(공포일 2016. 2. 29./시행일 2016. 9. 1.)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표 23] 상표법 상 규제_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마. 거짓표시의 금지

상표법에서는 출원 및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출원 및 등록이 된 것과 같이 상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금지유형으로는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③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⁶¹⁾

- [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61) 규제사무명 : 거짓표시의 금지(공포일 2016. 2. 29./시행일 2019. 9. 1.)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24] 상표법 상 규제_거짓표시의 금지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가.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정당한 법률적 원인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해당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③ 종류·유형·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④ 상기 열거된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⁶²⁾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2) 규제사무명 :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공포일 2015. 1. 28./시행일 2015. 1. 28.)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

[표 25] 부정경쟁방지법 상 규제_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나.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 지정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지정기준,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⁶³⁾ 이에 시행령에서는 원본 증명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인력기준으로서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 운영인력으로 i)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ii)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 설비기준으로서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i)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ii)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관련 고시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둔다.⁶⁴⁾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본증명기관의 출입통제 장치 기준,⁶⁵⁾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 감시·통제 기준,⁶⁶⁾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 잠금장치 기준,⁶⁷⁾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 재해예방설비 기준,⁶⁸⁾ 원본증명기관의 서비스 운영설비 기준,⁶⁹⁾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관리설비 기준,⁷⁰⁾ 원본증명기관의 복제설비 기준,⁷¹⁾ 원본증명기관의 입증정보 보관설비 기준,⁷²⁾ 원본증명기관의 송수신 설비 기준,⁷³⁾ 원본증명기관의 외부시스템 연계 기준,⁷⁴⁾ 원본증명기관의 증적관리 설비 기준,⁷⁵⁾ 원본증명기관의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기준,⁷⁶⁾ 시스템운영실의 통제구역 구획을 위한 요

63)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공포일 2017. 7. 26./시행일 2017. 7. 26.)

64)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공포일 2016. 12. 30./시행일 2017. 1. 1.) 해당 규제사무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서 일몰기간은 2021. 1. 1. ~ 2022. 12. 31.이다.

65)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출입통제장치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66)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 감시·통제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67)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 잠금장치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68)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 재해예방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69)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서비스 운영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0)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관리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1)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복제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2)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입증정보 보관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3)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송수신 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4)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외부 시스템 연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5)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증적관리 설비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6)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기준(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건⁷⁷⁾ 등 그 제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조치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으로는 ①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②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③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교육) 및 설비 보호, ④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및 ⑤ 위의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 위임한다.⁷⁸⁾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77) 규제사무명 : 시스템운영실의 통제구역 구획을 위한 요건(공포일 2014. 1. 29./시행일 2014. 1. 31.)

78)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조치(공포일 2014. 12. 9./시행일 2015. 1. 1.) 해당 규제사무는 재검토행 일몰규제로서 일몰기간은 2021. 1. 1. ~ 2022. 12. 31.이다.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것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수신에 관한 사항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입증정보 보관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등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자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 2. 등록 확인 및 통보 기능 3. 바이러스·오류 등의 검사 및 통보 기능 4.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지문의 속성정보 검증 기능 ② 원본증명기관은 원본파일 입증정보를 이용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처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자의 처분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 2. 입증정보의 보관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3. 입증정보의 보관기간 연장 및 폐기 기능 4. 폐기증명서의 발급 및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 추가 기능 ④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저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관 중인 전자지문의 위조·변조 방지 및 비정상적 삭제 방지 기능 2. 전자지문의 무결성을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는 기능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송수신 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 2.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처리 기능 3.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 ② 원본증명기관은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메시지의 송수신 확인 기능 2. 송수신 메시지의 부인 방지 기능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시스템 연계) 원본증명기관은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외부시스템에서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2. 원본증명기관 내에서의 처리 결과를 외부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증적관리 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를 통하여 원본증명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증정보의 등록 이력 2.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증정보의 유지 이력 ② 원본증명기관은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조·변조·삭제를 방지해야 한다. ③ 원본증명기관은 생성된 감사기록을 생성시점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네트워크·시스템 보안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본증명기관이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1. 입증정보 보관설비, 송수신 설비, 증적관리 설비, 복제설비 및 그 밖의 원본증명을 위한 설비는 시스템 운영실 내에서 관리할 것 2. 시스템운영실의 외벽(원본증명시스템 운영실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원본증명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3. 제3호의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철판으로 용접되어 있을 것 4. 시스템운영실의 출입문은 물리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하고, 일반문은 강화 방화 기능을 채택하였을 것 5. 통풍창이 설치된 경우 통풍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하였을 것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출입통제장치) ① 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 운영실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인가자가 원본증명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의 여부와 실패 시 원인, 출입일자 및 시각, 출입자 등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 3.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특성 기반의 신원확인장치와 열쇠, 카드 등 소지 기반의 신원확인장치를 결합한 출입통제 기능 ② 원본증명기관은 정전된 경우에도 운영실 내 인원의 안전한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감시·통제)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은 출입의 감시·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감시 기능 가. CCTV를 설치하였을 것 나. CCTV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가능할 것 다. CCTV는 모든 출입행위를 녹화할 것 라. CCTV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할 것 마. CCTV 관리용 패스워드의 보호가 가능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출입통제장치로부터 출입현황 정보 확인 기능 가.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의 조회가 가능할 것 나. 시간별, 행위자별, 사건종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사기록의 검색이 가능할 것 다. 출입통제시스템 감사기록 저장공간의 소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할 것 마.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는 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되어 있을 것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물리적 잠금장치)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운영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물리적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원본증명시스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보안 캐비닛 2. 원본증명시스템관련 중요자료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 3. 잠금장치의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 있는 보관함 또는 캐비닛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재해 예방설비)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운영실은 재해발생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 화재경보장치 2.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등 화재대비용 소화장치 3. 원본증명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수재 예방설비 및 전원접속장치 4. 정전 시 지속적인 원본증명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 온도·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 6. 그 밖에 물리적 보안설비 내의 각종 전원장치에 대한 접지시설 및 비상 시를 대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서비스 운영설비)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업무를 위해 직간접으로 운영되는 웹서버·도메인 네임서버·메일서버 등은 별표 2(별표 2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를 준수해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스템 관리)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관리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자 현황 및 입증정보에 대한 검색·조회·갱신 등의 이용현황에 대한 작업 통계관리 기능
2. 네트워크 환경, 파일 저장 관리 등 작업환경 관리 기능
3.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4. 전자지문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 통제 기능
5. 원본증명업무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및 해당 프로세스의 감시 기능
6. 작업일정에 따른 데이터 복제 및 복구 등의 재해 복구 관리 기능
7. 원본증명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와 상태 점검 기능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복제설비) 원본증명기관의 복제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의 저장데이터를 보관하고, 장기 보관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복제장치 지원 기능
2. 시스템의 자료를 모두 복제할 수 있는 기능
3. 원본증명기관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를 무중단 상태에서 복제하는 기능
4. 장애 발생 시 복제된 데이터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
5.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복제 기능
6. 전자지문 및 주요자료를 내부지침에서 제시한 복제주기에 따라 복제하는 기능
7. 복제 데이터의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기능
8. 복제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캐비닛 등의 잠금 기능

[표 26] 부정경쟁방지법 상 규제_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다. 원본증명기관 행정처분 기준

원본증명기관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또한 원본증명기관이 지정취소된 경우 다른 기관에 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⁷⁹⁾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및 원본증명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를 한 경우는 필수적 지정취소 사유이다. ②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③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안정성·신뢰성 확보 조치 미시행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불이행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1개월, 2개월, 6개월)를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반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79)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 행정처분 기준(공포일 2015. 1. 28./시행일 2015. 1. 28.)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다.⁸⁰⁾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에서 사업위탁 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⁸¹⁾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경우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⁸²⁾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3

80)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공포일 2014. 12. 9./시행일 2015. 1. 1.)

81) 규제사무명 : 사업위탁기관 지정 취소 기준(공포일 2017. 11. 24.)

82) 규제사무명 :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공포일 2014. 12. 9./시행일 2015. 1. 1.)

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4. 1. 28.]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본조신설 2014. 1. 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6조(지정의 취소) 특허청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인력의 수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표 27] 부정경쟁방지법 상 규제_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라. 등록된 관련정보의 훼손 방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및 관련 정보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⁸³⁾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표 28] 부정경쟁방지법 상 규제_비밀유지 등

마. 시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행사기한의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행위를 한 사람도 인지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권 행사기한을 제한한다.⁸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표 29] 부정경쟁방지법 상 규제_시효

바. 업무의 위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간 지정에 관한 요령」에서 사업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연구·교육·홍보사업의 위탁기간 지정 기준으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보유 및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으로는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보유하고,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⁸⁵⁾

83) 규제사무명 :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및 관련정보의 멸실 및 훼손 방지(공포일 2015. 1. 28./시행일 2015. 1. 28.)

84) 규제사무명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행사기한 제한(2015. 1. 28..2015. 1. 28.)

85) 규제사무명 : 사업 위탁기관 지정요건(공포일 2015. 11.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간 지정에 관한 요령]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

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

가.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

나.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표 30] 부정경쟁방지법 상 규제_업무의 위탁

6. 발명진흥법

가. 연구노트 활용 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중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⁸⁶⁾

[발명진흥법]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86) 규제사무명 : 연구노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공포일 2013. 7. 30./시행일 2014. 1. 31.)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추는 것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표 31] 발명진흥법 상 규제_연구노트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령

나.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필수적 지정취소 사유이며, 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⁸⁷⁾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1. 18.>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표 32] 특허법 상 규제_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관련 법령

다. 승계여부의 통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면(발명진흥법 제13조),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4개월) 내에 문서로 통지할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⁸⁸⁾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0.>

87) 규제사무명 : 정보화 전문기관 행정처분(공포일 2015. 11. 18./시행일 2015. 11. 19.)

88) 규제사무명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통지 의무(공포일 : 2013. 7. 30./시행일 2014. 1.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표 33] 발명진흥법 상 규제_승계여부의 통지 관련 법령

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시 사용자에게 보상의 형태, 보상액 등이 담긴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종업원에게 고지할 것을, 또한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⁰⁾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8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관련 조례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교육청의 직무발명 보상관련 자치법규 현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세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교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⁸⁹⁾로 정한다.

[표 34] 특허법 상 규제_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관련 법령

마. 직무발명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

종업원과 자문위원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¹⁾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30.>

[표 36] 발명진흥법 상 규제_직무발명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 관련 법령

바.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⁹²⁾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울	산	구	천	주	전	중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육
159	26	7	4	4	5	4	1	6	19	8	12	3	6	22	7	20	1	4

90) 규제사무명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시 사용자 등에 대한 의무 부과(공포일 2013. 7. 30./시행일 2014. 1. 31.)

91) 규제사무명 : 직무발명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공포일 2013. 7. 30./시행일 2014. 1. 31.)

92) 규제사무명 :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요건(공포일 2017. 12. 15.)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지정요건)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발명진흥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4.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표 37] 발명진흥법 상 규제_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관련 법령

사.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발명진흥법에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경영활동 촉진에 있어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인증 기준을 미달할 경우 인증이 취소됨을 규정하고 있다.⁹³⁾ 관련하여 시행령에 경영인증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⁹⁴⁾ 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과⁹⁵⁾ 그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⁹⁶⁾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93) 규제사무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공포일 2016. 1. 27./시행일 2016. 4. 28.)

94) 규제사무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기준 등(공포일 2016. 6. 21./시행일 2016. 6. 23.)

95) 규제사무명 : 인증의 유효기간 등(공포일 2016. 6. 21./시행일 2016. 6. 23.)

96) 규제사무명 : 인증의 비용(공포일 2016. 6. 21./시행일 2016. 6.23.)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3.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4.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표 38] 발명진흥법 상 규제_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정과 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⁹⁷⁾⁹⁸⁾ 평가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⁹⁹⁾ 그 밖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¹⁰⁰⁾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평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경고, 업무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⁰¹⁾

97) 규제사무명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공포일 2013. 7. 30./시행일 2014. 1. 31.)

98) 규제사무명 : 발명의 평가기관 행정처분 기준(공포일 2013. 7. 30./시행일 2014. 1. 31.)

99) 규제사무명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공포일 2018. 5. 28./시행일 2018. 5. 29.)

100) 규제사무명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공포일 2017. 12. 26.)

101) 규제사무명 : 발명의 평가기관 행정처분(공포일 2014. 12. 9./시행일 2015. 1. 1.)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5. 5. 18.>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8. 5. 28.>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0. 19.>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5. 28.>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 발명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 2. 삭제 3.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4.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5.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표 39] 발명진흥법 상 규제_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후 2년간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2)103)104)

[발명진흥법]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 삭제 <2017. 12. 12.>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춘 것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102) 규제사무명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기준(공포일 2015. 5. 18./시행일 2015. 11. 19.)

103) 규제사무명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기준(공포일 2017. 12. 12./시행일 2018. 1. 1.)

104) 규제사무명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행정처분 기준(공포일 2015. 11. 18./시행일 2015. 11. 19.)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2. 12.>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표 40] 발명진흥법 상 규제_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및 지정취소

차. 산업재산권의 보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보안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⁰⁵⁾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7. 30.>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5) 규제사무명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요건(공표일 2017. 12. 11.)

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춘 것
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표 41] 발명진흥법 상 규제_산업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운영 등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⁰⁶⁾¹⁰⁷⁾¹⁰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6) 규제사무명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공포일 2017. 3. 14./시행일 2017. 9. 15.)

107) 규제사무명 : 발명개발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공포일 2021. 1. 5./시행일 2021. 1. 5.)

108) 규제사무명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공포일 2017. 9. 15./시행일 2017. 9.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 1. 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⑥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표 42] 발명진흥법 상 규제_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관련

109) 규제사무명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공포일 2017. 9. 15./시행일 2017. 9. 15.)

제3장 산업재산권 법령 내 규제 발굴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현행 규제정보포털 내에 규제사항 및 규제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법령 내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사항들에 대한 규제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 전환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소관법령 중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활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¹¹⁰⁾

포지티브 방식에 비하여 네거티브 규제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현실 대응력을 제고하고, 금지요건을 믿고 이외의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피수명자의 신뢰를 보호, 안정된 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은 일부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보호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형량하여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진입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사후규제의 대상요건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 인·허가의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¹¹⁾

I. 진입규제 사항 검토

규제의 개념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들은 모두 규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전환 대상의 가능성이 있는 규제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법령 중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나 등록, 인허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요건이 되는 대상사업, 기술, 제품 등의 종류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진입규제를 두면서 그 요건으로 시설이나

110) 권오상·노창희·이수연·이순환, 「방송통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8, 25면.

111)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0, 332면.

장비를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나, 인허가 등의 특례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특례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또한 시험이나 검사, 인증제도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시험·검사·인증의 특례를 한정적으로 두는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업종·업체·사람의 종류나 범위가 열거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¹¹²⁾

이하에서는 산업재산권 법령 내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 법령과의 비교를 실시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진입규제 관련 규정

산업재산권 법령에서는 각각 필요에 의하여 특정 전문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내용의 경우, 특정한 요건을 열거하면서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거나”, 각 호의 요건을 열거하면서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기관으로의 지정, 진입을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진입규제의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문기관 등록, 지정의 경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각 호 요건의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¹¹³⁾ 별도의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유사한 역량을 가진 신규 대상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입할 여지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특허법 실용신안법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21-26호)	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각목생략)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각목생략)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112) 권오상·노창희·이수연·이순환, 「방송통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8, 28-29면.

113) 특허 인력의 경우 학위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경력의 기간, 업무의 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및 신규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제12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별표4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 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각목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특허청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생략)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청 고시 제2017-16호)	제4조(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 특허청장으로부터 국내기탁기관으로 등록을 받거나,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위취득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4. 다음 각 목의 미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5. 수탁 미생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6. 이 고시에 따른 기탁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21-6호)	1. 심사지원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각목생략)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 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12조 (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은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u>은 조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디자인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디자인 심사·심판 또는 심사지원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디자인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생략)
상표법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제2021-21호)	있을 것 (각목생략)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제9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상표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2.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상표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특허청고시 제2020-42호)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 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 (각목생략)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32호)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춘 것	
	원본증명기관 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고시 2020-42호)	제4조(입증정보 보관설비)	각 조에서 특정 요건을 각 호로 두어 해당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
		제5조(송수신 설비)	
		제6조(시스템 연계)	
제8조(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설비)			
제9조(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제10조(출입통제장치)			
제11조(감시·통제)			
제12조(물리적 잠금장치)			
제13조(재해 예방설비)			
제15조(시스템 관리)			
제16조(복제 설비)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u> 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춘 것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 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추는 것 (이하생략) 제8조의3(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모두 갖춘 법인</u>을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 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이하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삭제 <2021. 1. 5.>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u> 특허청장에게 <u>신청</u>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4. 12. 9., 2015. 11. 18., 2018. 5. 28.>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별표 5의 <u>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이하 생략)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u>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u>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0. 19.>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각목생략)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u>지정받으려는 자</u>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2. 30.>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삭제 <2016. 12. 30.>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추 것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 삭제 <2017. 12. 12.>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u>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특허청고시 제2022-2호)	제72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 발명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u>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u> 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 2. 삭제 3.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4.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5.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7호)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 1. 5.> ②~③ (생략)

[표 43] 산업재산권 법령 내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진입규제)

2. 진입규제 관련 개선방안 검토

특허청 소관법령 내 진입규제 관련 규정의 경우 대부분 요건을 열거하는 한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¹¹⁴⁾

이는 특허청 소관법령의 특성에 기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기관 등의 지정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타 법령 내에서의 지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완화된 지정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고,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규정하되 지정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다소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 등이 존재한다.

상위규정	행정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114) 특히 전문기관 지정·등록에 관한 규제는 2020년 규제개선 심사 사례에서 기 규제의 기준에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기도 하다.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

제3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제6조(현장확인)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확인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검사 인력·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u>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	--

[표 44]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에서는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전문기관의 경우 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후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부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인력이나 설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규정	행정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식품 관련 교육과정, 훈련강사 보유현황 및 교육운영 실적 2.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	--

[표 45]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의 경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기관의 지정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한편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단체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또한 지정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인력이나 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규정	행정규칙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표 46]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산권 법령의 사례와 같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을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요건의 경우 진입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점에 참조할 만하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면적 규정의 경우 교육생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상위규정	행정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청대상) 엔지니어링기술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신청대상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 및 별표 1의 세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표 47]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대상에 대하여 별표의 세부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요건의 구체성을 비교해보면 산업재산권 법령상 전문기관에 대비할 때 다소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법령상의 전문기관의 경우 매우 명확한 요소들을 전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각 요소에 대하여 다른 주관적인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편이다. 그런데 타 법령의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신청 또는 지정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치 등의 요소가 아닌 사업계획서, 일반현황 등으로 구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부의 요소가 불완전하게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법령이나 전문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곧바로 산업재산권법령에서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방식의 활용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살펴도록 한다.

상위규정	행정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조직진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4.1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1. 조직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2. 조직·정원관리 관련 법령·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외국정부의 조직·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분석 4.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 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 제7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예산운영 계획 등)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⑨ 제7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표 48]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정부조직법 관련 하위규정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지정신청서와 각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 중에는 정량적 요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현황 및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정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규정	행정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2. 전문기관 자격요건

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3. 지정기준 ☐ 지경부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이 적정 할 것 ☐ 연구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을 보유할 것 4. 지정절차 ☐ 지식경제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② 연구장비의 도입심의, 구매·공급, 유지·보수, 회수·재배치 등 관리재원 조달 및 예산 운영 계획 ③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촉진 계획 ☐ 지식경제부 장관은 상기 지정기준 요건을 검토하여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	---

[표 49]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두어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준의 경우, 형식적 규정 외의 부분의 경우 적정한 운영계획, 전담조직 및 인력의 보유,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운영 계획, 운영역량 등 정성적·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요소들을 지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검토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에 의하여 보다 유연하게 해당 전문기관으로의 진입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¹¹⁵⁾

115) 다만, 해당 고시의 경우 2012년에 시행되었으며, 지식경제부의 명칭이 바뀐 현재에도 여전히 개정

다. 참고할만한 그 밖의 규정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는 그 구조가 산업재산권법령 상의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법 조문의 용어의 차이로 보다 완화된 진입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여, 두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산업재산권법령 상 전문기관 지정요건 (대표조문 발췌 : 디자인보호법)	관세법상 전문기관 지정요건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지원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각목생략)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 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각목생략) 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전담체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각목생략)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별표2의 보안현황 조사표에 규정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에 규정된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표 50] 완화된 진입규제 사례_관세법

산업재산권 법령상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세법상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그 구조가 상이하나 기본적인 요건에서 산업재산권 법령의 경우 ‘모두 갖춘’이라는 표현을 관세법

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으며, 관련한 다른 고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고시이거나 실무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에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법령상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상 고시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관세법의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여 각호의 특정 요건이 누락되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가 될 만한데, 동일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유연한 규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3.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산업재산권 법령의 전문기관은 특정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은 전제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역량이 있는 신규 기관 등의 진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신규 기관 산업재산권 각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서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보고자 한다.¹¹⁶⁾

가. 공통사항

각 법령별 구체적인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		개선방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	법인이나 단체
미생물기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기관	
디자인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	
상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	

116) 관련하여 ‘선행기술 전문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시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선행기술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선 역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위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이나 단체	
원본증명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전문성이 있는 자	
연구노트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기관 또는 단체	
정보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비영리기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기관 또는 단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회사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기관 또는 단체	

[표 51] 산업재산권 법령 내 진입규제 부분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첫째, 법문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백히 다른 범주를 규율하는 것이며, 따라서 산업재산권법령 내에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 등을 통하여 보다 완화된 진입규제를 규정할 수 있다.¹¹⁷⁾

둘째, 산업재산권 법령 내의 전문기관 등이 될 수 있는 지위는 법인, 기관, 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기관, 회사 등 그 용어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이에 해당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① 네거티브 규제전환 관점에서 진입의 용이성을 위하여 각 용어가 포함하는 범위를 명확히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각 법령 내에서 전문기관을 설정한 목적에 합치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개선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② 부수적으로 법령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통일이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법인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 국가·공공단체·각종 회사·사학·종교단체 등이 법인에 속하며, 작용이나 목적, 존재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¹¹⁸⁾

117) 예컨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경우는 ~~로 할 수 있다’ 등의 방식을 통하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1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법인 검색 참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AJAX>>

국가 공권력의 작용에 따라	공법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영조물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각종 회사
	증간법인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설립목적의 영리성에 따라	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산·예술·사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법인
존재이유에 따라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표 52] 법인의 종류

② 기관이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의미한다.¹¹⁹⁾ 한편 법적인 용어로서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각각의 법에서 그 목적에 타당하도록 기관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정의하고 있다.¹²⁰⁾ 이에 따르면 법인과 기관은 사실상 그 대상범주가 거의 동일하다 할 것이나, 기관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¹²¹⁾

③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한다.¹²²⁾ 단체 역시 법적인 용어로서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각각의 법에서 그 목적에 타당하도록 단체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정의하고 있다.¹²³⁾ 이에 따르면, 기관보다는 단체가 보다 넓은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 볼 수 있다. 기관은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체는 같은 목적이기만 하면 그 영역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보다 단체가 보다 넓은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임은 명백하다. 법률상 ‘법인 아닌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질(사람의 집합)은 갖추고 있으나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

119) 네이버사전-기관 검색 참조,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30474a6a1a7494ebbd5cc94d0378de>>

120) 예컨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관”이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산업안전보건본부·국(이하 “실·산안본부·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살펴건데, 각 법령의 목적별로 특정한 역할을 가진 조직을 의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121)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법인은 모두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관은 모두 법인이라 가정할 수 없다.

122) 네이버사전-단체 검색 참조,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EB%8B%A8%EC%B2%B4&query=%EB%8B%A8%EC%B2%B4&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23) 예컨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르면,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다. 즉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성질상 사단법인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즉 사원의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에 의하여 행동하며, 대표자가 있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소법 제52조).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總有)로서(제275조), 구성원은 지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 재산뿐이며 각 구성원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산의 공시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그러나 예금 등에 관해서는 대표자의 성명에다 사단 대표자라는 것을 명시하여 사단 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례가 인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종, 교회, 동, 리, 자연부락 등이며 기타 제중, 복중, 친목계, 불교단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등도 이에 속한다.¹²⁴⁾ ‘법인격 없는 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재산의 총체)은 갖추고 있으나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제1028조 이하),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제1053조 이하), 파산재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이하), 각종의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등이 그 예이며, 판례는 유치원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본 예가 있다.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지만(제275조),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비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¹²⁵⁾

④ 회사란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¹²⁶⁾ 이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개념 대비 회사가 가장 좁은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비영리기관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상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할 수 있다.¹²⁷⁾ 이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은 앞서 살펴본 법인, 기관, 단체에 비하여 좁은 범위를 규율하는 개념이자, 회사와 반대되는 영역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단체-기관·법인-회사·비영리기관의 순으로 그 포괄하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위의 해석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가

1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권리능력 없는 사단 검색 참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AJAX>>

1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권리능력 없는 재단 검색 참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AJAX>>

126)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127)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능성은 추후 생각하더라도) 제정 당시 법령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제한을 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특히 ‘법인’이나 ‘기관’만을 규정한 경우 그 지정의 목적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인이 아니어도 기관이나 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 전문기관별 등록·지정요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진입규제로서 등록 또는 지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까다로우면 이는 자격이 갖춘 자만 진입이 가능한 강력한 포지티브 규제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때 행정청의 요건 검토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구비가 어려운 시설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갖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에 요구하고 일정한 시설규제가 오히려 불합리한 요건이 될 수 있다.¹²⁸⁾

현행	개선방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	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기 및 시스템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삭제) 2. (삭제)

[표 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요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128) 권오상·노창희·이수연·이순환, 「방송통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8, 100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에서 인적 요건 및 물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인적 요건의 경우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문 상 ‘~등’이라고 하여¹²⁹⁾ 언급한 사항 이외의 전문성을 가진 자 역시 진입할 여지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네거티브 규제전환 관점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만약 특히 ‘특허’와 관련한 실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산업재산권 중 특허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의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취지에서 동 요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적 요건에 각 호를 규정하여 시스템과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적 요건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서 적절하지 못한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기 및 시스템 등으로 그 문언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원본증명이라고 하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으로, 필수적인 시설, 장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시점에서만 필요하였던 규제 등이 존재할 수 있음에,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원본증명업무와 비교될 수 있을만한 타법 상의 관련 규정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¹³⁰⁾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의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세부 규정을 일부 변경·삭제·개선해 오고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최근의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과 관련한 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12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으로 한정함’을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

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9호, 2021. 8. 27.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76호, 2015. 10. 16.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9호, 2021. 8. 27. 시행)	비교
제10조(통제구역 설치) 센터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 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보관설비, 송·수신 설비, 시점확인 설비, 증적관리 설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 및 검증을 위한 설비는 시스템 운영실내에서 각각 구획하여 분리 2. 센터의 백업설비는 제1호의 설비 및 그 밖의 다른 설비와 분리하여 별도 운영실에 설치 3. 시스템 운영실의 외벽(센터시스템 운영실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센터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4. 제3호의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철판으로 용접 5. 시스템 운영실의 출입문은 물리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일반문은 강화 방화 기능을 채택 6. 통풍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통풍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	제10조(통제구역 설치) 센터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통제구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보관설비, 송·수신 설비, 시점확인 설비, 증적관리 설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 및 검증을 위한 설비는 통제구역에 설치 2. 센터의 백업설비는 제1호의 설비 및 그 밖의 다른 설비와 분리하여 통제구역에 설치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통제구역에 관한 세부 요건을 개선 및 삭제
제11조(출입통제장치) ① 센터는 시스템 운영실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출입통제	제11조(출입통제장치) ① 통제구역은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인가자가 센터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 통제 기능 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의 여부와 실패시 원인, 출입 일자 및 시각, 출입자 등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 3.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생체특성기반의 신원확인 기능과 열쇠, 카드 등의 소지기반의 신원확인 기능을 결합한 출입통제 기능 ② 센터는 정전 시에도 운영실내 인원의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백업설비가 설치된 별도의 운영실은 제1항,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어야 한다. ③ 삭제	> 백업설비가 설치된 별도의 운영실에 관한 출입통제장치 관련 규정 삭제
---	---------------------------	---

[표 54]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개정내용 (1)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9호, 2021. 8. 27. 시행)	비교
제4조 ① 센터는 전자문서의 등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정보패키지"라 한다) 기술규격에 따른 정보패키지의 생성 및 검증 기능	제4조 ① 센터는 전자문서의 등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정보패키지"라 한다)의 생성 및 검증 기능	> 기술규격을 제외하여 정보패키지의 생성 및 검증 기능만으로 만족하도록 개정
제4조 ③ 센터는 전자문서의 열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시 전자	제4조 ③ 센터는 전자문서의 열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시 보관	> 화면캡처를 저

문서 내용의 수정, 복사, 저장, 화면캡처 등 방지 기능	중인 전자문서 내용의 수정, 복사, 저장 등 방지 기능	장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변경
제4조 ④ 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정보패키지" 기술규격에 따른 전자문서 발급 기능	제4조 ④ 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삭제	> 기능요건 일부 삭제
제4조 ⑧ 센터는 전자문서의 변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자문서 내용의 변경 없이 전자문서의 열람 또는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센터가 지원하는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 2. 이용자 요청 시 변환된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 기능 3. 이용자 요청 시 변환된 전자문서에 대한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을 추가하는 기능	제4조 ⑧ 센터는 전자문서 내용의 변경 없이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삭제>	> 각 호로 세분화된 기능을 각각 삭제하고 포괄적인 기능으로 구성
제5조(송·수신 설비) ① 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기능 3.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 ② 센터는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 및 수신 여부 확인 기능	제5조(송·수신 설비) ① 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무결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는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 및 수신 여부 확인 기능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 ③ 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갖추 수 있다	> 각 호로 세분화된 기능을 통합, 축소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 ③ 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 수 있다. 1. 이용자별 메시지함 관리 기능 2. 전자문서 송신 또는 수신 이력관리 기능 3.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전자문서 송신, 수신 또는 열람 증명서를 발급, 관리하는 기능		
제12조(감시·통제) 센터는 출입 감시·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 감지 및 경보 기능 가. 침입감지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기능 나. 침입감지장치가 침입을 감지하였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각 알리는 기능 다. 침입감지·경보장치와 연결된 침입 발생 위치 확인 기능 라. 삭제	제12조(감시·통제) 센터는 출입 감시·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 침입감지 및 경보기능의 세부 내용을 삭제

[표 55]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개정내용 (2)

위와 같은 개정의 사례를 토대로 비교해 볼 때,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존재하는 유사 조문을 개정할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5조(송수신 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메시지를 송수신	제5조(송수신 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무결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하는 기능 2.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처리 기능 3.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 ② 원본증명기관은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메시지의 송수신 확인 기능 2. 송수신 메시지의 부인 방지 기능	<u>시설·장비 규정 참고)</u> 2.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참고) 3.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참고) ② 원본증명기관은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 및 수신 여부 확인 기능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
제9조(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1. 입증정보 보관설비, 송수신 설비, 증거관리 설비, 복제설비 및 그 밖의 원본증명을 위한 설비는 시스템 운영실 내에서 관리할 것 2. 시스템운영실의 외벽(원본증명시스템 운영실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원본증명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3. 제3호의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철판으로 용접되어 있을 것 4. 시스템운영실의 출입문은 물리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하고, 일반문은 강화 방화 기능을 채택하였을 것 5. 통풍창이 설치된 경우 통풍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하였을 것	제9조(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1. <좌 동> 2.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참고) 3.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참고) 4.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참고) 5. <삭 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참고)

[표 56] 원본증명기관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II. 특례 사항 검토

1. 우수기관 선정 관련

가. 관련규정

인허가 등의 특례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특례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규제에 해당하며, 시험·검사·인증의 특례를 한정적으로 두는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업종·업체·사람의 종류나 범위가 열거된 경우 역시 규제로 본다.¹³¹⁾ 산업재산권 법령 내에서도 인증이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며, 각 요건을 규정하여 한정적으로 인증 및 특례의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법령	근거법령/행정 규칙 등	내용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특허청고시 제2020-20호)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위원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에 맞추어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4개 기관을 선정 한다.

[표 57] 산업재산권 법령 내 특례부여에 관한 사항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의 경우, 우수기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기관의 개수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많은 경우 인증제도에서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의 충족방식으로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의 경우 일정한 점수에 더하여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의 개수를 제한하여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 우수기관 선정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통상 타법령의 경우에서도 우수기관의 선정이나 필요한 인증 등에 있어서, 각 요건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우수기관의 선정 또는 인증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기관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법령/행정규칙 명	내용
-----------	----

131) 권오상·노창희·이수연·이순환, 「방송통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8, 28-29면.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0호)	각 요소별 배점이 존재하며, 일정한 총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규정(신규 인증의 경우 중소기업 60점 이상, 대기업 70점 이상,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중소기업 60점 이상, 대기업 등 70점 이상)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9호)	신청기업이 별표에 따른 합격총점 및 심사부문별 최소기준 점수를 갖춘 경우
우수물류기업인증 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4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을 상회할 것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80호)	별표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을 상회할 것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4호)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 문서평가 후 적합/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전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현장평가의 경우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표 58] 인증·선정방법 관련 타 규정 내용 검토

이에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선방안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에 맞추어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4개 기관을 선정 한다.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에 맞추어 합산한 종합점수가 00퍼센트 이상의 점수인 기관을 선정한다.

[표 59] 산업재산권 법령 내 특례부여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다만,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마련 당시, 4개의 기관으로 설정한 명확한 사유나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4개의 기관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기관의 개수를 제한하여야 할 목적이나 이유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로 검토하여 전환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우선심사/신속심판 관련

가. 관련규정

산업재산권 법령 내에서는 출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	내용
특허법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최근개정 2022. 4. 19.>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법령	내용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2019. 7. 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내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최근개정 2017. 12. 29.>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내용
상표법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개정 2020. 9. 29.>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익을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표 60] 산업재산권 법령 내 우선심사 관련 규정

우선심사제도는 다른 지식재산권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규정된 사항 이

외의 우선심사를 받을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법령 등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법령의 개정보다 빠른 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심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¹³²⁾ 또한 산업재산권 법령별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¹³³⁾

또한 특허법 제132조16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에 따른 「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는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선심판보다도 시급한 신속심판을 할 수 있는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내용
심판 사무 취급 규정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최근개정, 2021. 3. 31>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4의2. 삭제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개정 2020. 4. 6>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132) 예컨대 21년 6월 23일부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나,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한 것을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은 우선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다.

133)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 관련 특허우선심사 임시프로그램과 상표우선심사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한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우선심사 뿐만 아니라 우선항소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관련한 내용은 ; 강성윤, [기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코로나 19 관련 정책,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9. 29. 기사 참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1060>

규정	내용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자기 실시(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31>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1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한다.) <개정 2019. 9. 25, 2020. 1. 10>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 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신설 2020. 1. 10> 1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1. 3. 31> 15.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신설 2021. 3. 31>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개정 2020. 4. 6> 1.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규정	내용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1의3.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개정 2017. 5. 1>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개정 2020. 4. 6> 4의2.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신설 2020. 4. 6> 5.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개정 2019. 9. 25>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규정	내용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 사건 마.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사건 <신설 2021. 12. 3> 8.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사건 <신설 2021. 12. 3>

[표 61] 산업재산권 법령 내 우선심사 관련 규정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의 경우도 우선심사와 동일하게 법령의 개정이 없다면 그 신속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지라도 오히려 후순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의 경우 그 대상이 매우 폭넓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열거형으로 규정을 둔 것이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현행 우선심사 관련한 사항은 우선심사가 가능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포괄적 규정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타 법령의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 우선심사 관련 개선방안 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원칙 이외의 우선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우선심사, 신속심사, 신속인증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중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가능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타 법령상 사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제품의 통합 인증요령」을 두고 있다.¹³⁴⁾

134)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1호,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6호,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95호,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림청고시 제2019-55호,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은 상시 신청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관 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⁵⁾ 이 서식에 따르면 신속인증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인증의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속인증 신청사유			

[그림 2] 신기술·신제품의 통합인증요령 중 신속인증심사신청서 서식(일부)

3.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2022년 8월,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고된 바 있다. 이러한 개정안 역시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일환으로서, 해당 시행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등” 이라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한 사항을 일응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3호,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45호,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환경부고시 제2019-156호
135) 각 인증요령 상 (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조문 참조

현행	개정안(22. 8. 2.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생략) 13. (신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생략) 1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표 62] 산업재산권 법령(특허법) 내 우선심사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기술 서비스, 제품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이나 심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차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기에서 살펴본 「신속인증심사 신청서」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법령의 특성상 이 같은 방식의 전환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동일한 맥락에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내에서도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한 출원 건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디자인 및 상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제반하여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¹³⁶⁾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선방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생략) 15. 신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생략) 15.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 활용하거나 관련한 디자인등록출원

[표 63] 산업재산권 법령(디자인보호법) 내 우선심사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136) 디자인 우선심사에 관한 고시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현행	개선방안
상표법 시행령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생략) 3. 신설	상표법 시행령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생략) 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우선하여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 64] 산업재산권 법령(상표법) 내 우선심사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더하여 특허심판의 경우에도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위와 같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선방안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생략) 16. (신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최근개정, 2021. 3. 31> 16.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한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0호 서식)이 있는 사건

[표 65] 산업재산권 법령(심판사무취급규정) 내 우선심판 관련 네거티브 규제전환

III. 혁신창출 관련 사항 검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는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신기술이나 신산업 등의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분야로서, 현행 제도·정책 중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도 록 한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기재부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품(이하 "우수특허제품"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평 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 ②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 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 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③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 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표 66]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특허 분야에서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지정지침 을 두고 있다. 이 때 혁신제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혁신성’ 과 ‘공공성’ 이 인정 되어야 하며, 혁신성과 공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규정상 혁신성과 공공성의 부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두고 있는 타 법령들 역시 대부분이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혹은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②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 지침 목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호)¹³⁷⁾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4호)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2호)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산림청고시 제2021-156호)¹³⁸⁾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37호)¹³⁹⁾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8호)¹⁴⁰⁾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614호)

[표 67] 혁신제품 관련 정의규정 비교

하지만 이와 달리, 혁신성과 공공성 부분을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여,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0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

137) 해당 지침의 경우 혁신성에 대하여만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없음

138) 해당 지침의 경우 혁신성과 공공성을 분류하지 아니하면서, 혁신제품으로 혁신성 요건을 충족한 제품만을 제시하고 있음

139) 해당 지침의 경우 혁신성에 대하여만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없음

140) 해당 지침의 경우 혁신성에 대하여만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없음

나.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다.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예규 제689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②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표 68] 혁신제품 관련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한 사례

분야별로 혁신제품이 될 수 있는 사정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재난안전 분야의 혁신제품과 환경분야의 혁신제품의 경우 각 특성에 기해 혁신제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¹⁴¹⁾ 그렇다면 특허분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선방안
제3조 (정의) ②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제3조 (정의) ②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141) 다만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사례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저탄소화, 순환경제,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특정 요건을 정의규정에 추가하고 있으며, 혁신제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각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 분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표 69]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네거티브 규제전환

위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 분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으로 규정하여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과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제3호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신기술” 등으로 규정하여 혁신제품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에서는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한 특허 등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 사업에 지원하려는 자를 한정하고 있어, 보다 유연하게 개념정의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도록 한다.

현행	개선방안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

해 발굴·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해 발굴·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표 70]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네거티브 규제전환_1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창업인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혁신특허 산업화 지원 규정」 역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라는 규정 대신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으로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²⁾

현행	개선방안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42) 물론 인용이 된 법 자체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의 창업을 염두한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표 71]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네거티브 규제전환_2안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혁신특허사업화 지원 규정에서는 권리자와 예비창업자, 창업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 때의 예비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예비창업자를 ‘중소기업 창업하려는 자’로 국한하는 것보다 보다 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또는 특허 등을 가진 권리자에는 당연히 예비창업자와 창업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히 예비창업자라는 범주로 국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자 또는 창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제4장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개념 확대

I. 서론

시장진입규제는 대표적인 혁신의 장애요소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사전금지에 따른 규제는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개인의 창의적 욕구와 자유를 처음부터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발생을 시간적으로 지체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⁴³⁾ 이에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는 기존 ‘원칙허용·예외금지’ 입법방식을 추진하는 것 외에 입법 시에 개념 규정을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념 정의의 범주에서 제외됨으로서 시장진입을 제한 받게 되는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다.¹⁴⁴⁾

산업재산권 법령 내에서의 개념 규정 등이 신기술, 신제품의 진입에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개념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각 국가의 산업발전의 정도나 현황 등에 비추어 타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재산권 법령 내에 정의 개념 규정 등은 제정 이후 일부 그 요소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는 있어왔으나 큰 틀에서는 포지티브 형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음에, 과거 관련하여 제조업·오프라인 중심에서 설계되었던 정의규정이 신산업 발전이나 진입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의료 등 신기술의 권리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에 발명의 정의와 같이 산업재산권 법령 내 개념 정의에 대하여 국제적 조화를 위해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¹⁴⁵⁾

사실 산업재산권 법령 내에서의 정의규정 등은 과거에도 수차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장과 같은 형태의 입법안을 도출하는 것보다 가능한 방식들의 장단점 및 참고 사례 등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특허법 뿐만

143) 김태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검하여,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350면.

144) 김태호, 위의 논문, 352면.

145) 특허청, 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특허청 보도자료 2022. 7. 1. 참조

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법령 내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된 개념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관련 규정들을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II. 특허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발전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발명의 정의규정이 특허 제도를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특허대상으로서 발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기술 분야가 탄생할 때 특허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⁴⁶⁾ 과거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나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 인정여부로 다양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발명의 정의규정으로 인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AI 관련 발명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발명의 정의규정을 AI 관련 발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된다. AI 관련 발명이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AI 관련 발명 그 자체가 자연법칙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AI 관련 발명의 경우 기술적 요소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수준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출되는 각 단계와 수단으로 구성되고 그러한 각 단계에 의하여 생성되는 생성물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¹⁴⁷⁾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① 발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만을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과, ②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발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은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5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¹⁴⁸⁾

	주요국 (네거티브 방식)	우리나라 (포지티브 방식)
규정방식	발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만 규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으로 규정
운영국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세계 23개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5개국

[표 72]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발명의 정의' 규정 운영 현황

146) 김관식, 특허권 보호의 국제적 차이 및 법적 과제, 제21회 지재연 포럼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발표자료, 2008, 2면,

147) 함영옥,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2, 198면.

148) 표 출처는 ; 특허청, 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특허청 보도자료 2022. 7. 1. 참조

국가	정의규정
미국	특허법 제100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달리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발명’이라 함은 발명 또는 발견을 의미한다. (이하생략)
	특허법 제10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누구든지 새롭고 유용한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그에 의한 신규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특허법이 정한 조건과 요건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특허법 제2조 (해석) 발명이라 함은 모든 새롭고 유용한 기술, 과정, 생산물이나 물질의 조합과 모든 기술, 과정, 기계, 생산물이나 물질의 조합에 있어서 모든 새롭고 유용한 개선을 의미한다.
중국	특허법 제2조 (발명창조의 정의) ②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독일	특허법 제1조 ① 특허는 어떠한 기술 분야 발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특허가 부여된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611-1조 모든 발명은, 그 권리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청장에 의해 교부되는,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도	특허법 제2조(정의 및 해석) (j) ‘발명’이란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신규의 제품 또는 방법을 말한다.
러시아	민법전 제4부 제1350조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 1. 정의된 목적에 따라 물건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특히 장치, 물질, 미생물 균주, 식물 또는 동물 세포의 배양) 또는 방법(물질적 수단의 도움으로 물질적 대상에 대한 영향을 실현하는 과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기술적 해결 은 발명으로서 보호된다. 만약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일본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한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4조(용어의 해석) 12. 발명은 자연법칙의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절차의 형태를 한 기술적 해결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정의)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표 73] 국가별 발명의 정의규정 비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의 전제가 되는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불특허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01조에서 특허가능한 내용으로 새롭고 유용한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그에 의한 신규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 이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분리하거나 추출하면 특허의 대상이 되고, 비록 생물이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즉 특허대상 인지의 판단은 생물체인가 무생물체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발명’ 인가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컴퓨터 응용에 관련된 것이더라도 기계로 읽는 것이 가능한 구체적인 매체에 구현된 것은 물건으로 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단계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¹⁴⁹⁾

우리나라는 제도 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1973년 특허법에서부터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발명의 정의 규정에 대한 도입취지나 개정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조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특허법 제2조를 계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⁵⁰⁾ 현재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 정의조항은 우리 법원이나 특허청 등의 실무에서 이른바 ‘발명의 성립성(成立性)’ 요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 즉 실무에서는 우리 특허법상의 발명이 성립되려면 ① 위 정의조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② 그것이 완성(完成)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조항을 불충족하거나 미완성(未完成)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진보성 등의 구비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바로 특허 거절이유(拒絶理由)가 된다.¹⁵¹⁾

이에 우리나라의 발명의 정의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독점이나 부당한 특허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특허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특실심기준에 있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¹⁵²⁾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49) 김관식, 특허권 보호의 국제적 차이 및 법적 과제, 제21회 지재연 포럼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발표자료, 200, 83면.

150) 윤선희, 발명의 정의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지식재산21」 특허청, 2002, 57면.

151) 박준석,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13, 775면.

152)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자연법칙 자체,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기능. 단순한 정보의 제시, 미적창조물,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자체 및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미완성 발명으로 전 세계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III. 실용신안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실용신안 제도는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보호하여 자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발명과의 차이점은 ‘고도함’에 있다. 이하에서는 실용신안과 유사한 제도로써 소특허, 소발명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개념 규정을 살펴본다.

국가	실용신안에 상응하는 개념	정의규정
중국	실용신안	특허법 제2조(발명창조의 정의) ③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독일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1조 ① 실용신안으로서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은 보호된다. ②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다음 각 호는 실용신안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적 형태의 창조 3. 지적활동, 게임 또는 비즈니스 활동 계획, 규칙 및 절차,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4. 정보재생 5. 생명공학발명(특허법 제1조의2)
러시아	실용신안	민법전 제4부 제1351조 (특허받을 수 있는 실용신안의 조건) 1. 구조와 관련된 기술적 제안은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된다. 만약, 실용신안이 신규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일본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대한민국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표 74] 국가별 고안의 정의규정 비교

실용신안법 역시 그 정의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중국의 실용신안에 관한 정의 규정 등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며, 발명과 고안이 물품으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¹⁵³⁾ 고안이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

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방안'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IV. 디자인보호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이라 함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 유체동산을 말한다.¹⁵⁴⁾ ‘물품의 부분’ 은 물품의 전체 중에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의 형태로서 당해 물품에 있어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글자체’ 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화상’ 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을 개정해오면서 보호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나, 물품이라는 제한을 벗어나지 못해 보호대상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국외에서는 보호를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록할 수 없는 디자인 등이 존재한다. 예컨대 겹업(get-up)의 경우 EU 공동체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물 외부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된 겹업은 건물이나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리킨다. 하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인처럼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루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품성이 결여되어 있고, 때문에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로카르노 분류에 의해 인테리어 디자인이 겹업에 포함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¹⁵⁵⁾

153) 특허법에서는 물건(조성물 포함)이나 방법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나 실용신안법 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으로 한정된다.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이다. ; 특허청, 「특실심사기준」, 2022, 3107면.

154)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 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8후2900(2001. 4. 27. 선고), 2003후274(2004. 7. 9. 선고) 판결 참조

155) 전정화 외,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 한국지식재산연

EU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보호하고 있다.¹⁵⁶⁾ 미국의 디자인 특허분류에서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건물, 집, 창고 등과 같은 부동산 자체가 등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부분에 관하여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아울러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등록된 사례가 발견된다.¹⁵⁷⁾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 대응하는 다른 나라의 관계법령에서 디자인의 개념 규정을 살펴본다.

국가	디자인에 상응하는 개념	정의규정
미국	디자인특허	특허법 제171조 (디자인특허) 일반- 물품 (article of manufacture)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장식적 디자인을 발명한 자는 이 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디자인	특허법 제2조(발명창조의 정의) ④ 디자인은 제품 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EU	디자인	공동체디자인법 제3조 (정의) (a)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또는(그리고) 제품을 장식한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부터 파생되는 외형’이다. (b) 제품(product)의 범위에는 부품, 포장, 외장(get-up), 그래픽심벌, 인쇄용글자꼴을 포함한다.
독일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1조(정의) 1. 디자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인 외관으로, 특히 물품 자체 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채,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2. 물품은 공업 또는 수공업에 의한 모든 유체물로, 포장, 장식, 도형기호, 인쇄용 활자 서체 및 복합물품을 조립하기 위한 개개의 부품을 포함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인도	디자인	디자인법 제2조 (정의) (d) ‘디자인’이란, 수공업적, 기계적 혹은 화학적 인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혹은 결합을 불문하고,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구원·특허청, 2018, 99-100면 참조.

156) 전정화 외, 위의 보고서, 177면.

157) 전정화 외, 위의 보고서, 183면.

국가	디자인에 상응하는 개념	정의규정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품에서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의 모양 혹은 원리 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도 형법 제479조에 대해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1957년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도 포함하지 않는다.
베트남	산업디자인	지식재산권법 제4조(용어의 해석) 13. 산업디자인은 3차원 배열, 선, 색채 또는 이러한 요소의 결합으로 구현된 제품의 특정한 외관을 의미한다.
러시아	산업디자인	민법전 제4부 제1352조 (특허받을 수 있는 산업디자인의 조건) 1. 공업 생산품 또는 수공업제품의 외관에 대한 제안은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된다. 만약 자신의 본질적인 특징이 신규하고 독창적이라면 산업디자인은 법적 보호가 허용된다. 제품의 외형을 정의하는 미적 특징이 산업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에 속한다. 특히 형태, 외형, 장식, 결합색채, 선, 제품의 윤곽, 제품 소재의 결과 표면가공 특징이 이러한 것에 속할 수 있다. 제품의 기술적 기능과 특별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징은 산업디자인의 특징으로 보호될 수 없다. 2. 만약 제품의 외관 묘사에 반영된 이것의 본질적 특징 목록이 산업디자인의 우선일 전까지 세상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알려져 있지 않다면 산업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다.
일본	의장	의장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률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형상 등’),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 이하 동일하다.)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기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것 또는 기기가 그 기능을 발취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에 한해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7호 및 제8호, 제44조의3 제2항 제6호, 제55조 제2항 제6호를 제외하고, 이하 동일하다.)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국가	디자인에 상응하는 개념	정의규정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 75] 국가별 디자인의 정의규정 비교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제조)물품’이라는 용어를 법문에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 실무에서는 그 범위가 다소 넓게 해석되고 있다. 물품이기만 하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물품의 전체가 디자인이든 부분 디자인이든 상관없으며, 고정적으로 표현되거나 일시적으로 표현된 것도 보호가 가능하다. 미국 특허법의 경우 물품성이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⁵⁸⁾ EU 공동체디자인법에서는 물품 대신 제품(produc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품은 물품보다 상위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훨씬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⁹⁾ 중국의 경우는 그 보호대상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그 보호범위는 오히려 협소하였다. 중국의 경우 부분디자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2021년 6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 들어서야, 비로소 부분디자인제도가 도입되었다.¹⁶⁰⁾

디자인의 정의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는 국가별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해당 국가별 산업현황과도 관련이 있어, 그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고려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관점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58) 유미특허법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1, 31-32면.

159) EU공동체디자인법 제정 당시, 논의 초기에는 물리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인테리어의 내부장식과 같은 공간적, 장소적 개념은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정 미적 가치를 보유한 공간이나 장소 개념의 장식들도 디자인의 창작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가정, 사무실, 자동차 등 현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이나 사물의 경우 그 외장이 산업디자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면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1991, pp.57-58.

160) 특허청, 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가능, 특허청 보도자료 2021. 6. 21. 참조

V. 상표법상 포지티브 방식 개념 검토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그 표장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현재는 소리, 냄새 등을 포함하여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상표법의 경우는 그 정의규정이 이미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의규정의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는 현실세계에서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네거티브 전환의 여지가 낮다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법의 경우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개선할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표의 사용은 권리침해 여부 판단의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표법은 실물상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점유 또는 이전되는 전통적인 상표의 사용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규정의 제한은 디지털 상품의 유통이나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사용에는 적용이 곤란하여,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디지털 환경, 메타버스 등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열거형 방식의 상표의 사용의 정의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이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의 관점에서 그 사용을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상표의 사용을 열거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 상업적 사용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국가	정의규정
미국	상표법 제1조 (등록출원과 증명) (a) 상표 사용을 위한 출원 (1) 상거래에 사용 되는 상표의 권리자는 특허상표청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출원서와 진술서 및 청장이 요구하는 표장 견본 또는 사본을 특허상표청에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주된 등록부에 그 상표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 제48조 동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의 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서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	상표법 제14조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 제3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으로서 다음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1. 상표의 보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

국가	정의규정
	2.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상표 및 기호의 사용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공중의 혼동(그 상표와 관련을 연상하게 하는 위험을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3. 상표보호의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 다만, 이것은 그 상표가 독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상표로서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명성을 얻고 있는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는 이용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롭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2)의 요건이 충족되어질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가 금지된다. 1. 상품 또는 그 포장 또는 포장에 해당 표지를 부착하는 것 2. 해당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의 제공을 신청하거나 당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는 해당 상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3. 해당 표지를 부착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하는 것 4. 해당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5. 영업서류나 광고에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것 (4) 또한 제3자가 상표권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1.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포장 또는 외장 또는 라벨, 붙임표 또는 기장의 식별수단에 부착하는 것 2.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포장, 외장 또는 식별수단의 제공 신청,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또는 3.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포장, 외장, 또는 식별 수단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은 이러한 포장 또는 외장이 (2) 및 (3)에 근거하여 제3자가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포장 또는 외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식별수단이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5) 상표권자는 (2)에서 (4)까지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반복의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한 자는 침해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배상액 산정에는 권리 침해에 의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도 고려할 수 있다. 배상청구액은 침해자가 해당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적정한 보수로서

국가	정의규정
	지불하였을 액수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7) 침해행위가 기업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금지청구권과 해당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행한 것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당해 기업의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L.713-1조 제L.713-2조 및 제L.713-3조에 따라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나 사용은 금지된다. 1.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의 표장 부착 ; 2. 상품의 제공, 상품의 시중 판매 또는 표장 하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상품의 소지, 또는 표장 하에서의 서비스 제공 또는 공여 ; 3. 표장 하에서의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 4. 상호 또는 공식 회사명칭으로서 또는 상호 또는 공식 회사명칭의 일부로서의 표장 사용 ; 5. 거래서류 및 광고에서의 표장 사용 ; 6. 소비자법전 제L.122-1조 내지 제L.122-7조의 규정을 위반한 비교광고에서의 표장 사용 ; 7. 정상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제거 또는 수정. "양식, 방식, 체계, 모방, 장르, 방법"과 같은 단어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및 사용은 금지된다.
인도	상표법 제2조 (정의 및 해석) (2) 동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b)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에는 표장이 인쇄된 표시 또는 다른 시각적인 표시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i) 상품에 관해서는 물리적 관계인지 또는 기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ii) 서비스에 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공 또는 실시에 대한 기술 또는 그 일부로서의 해당 표장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러시아	지식재산법 제1484조 (상표에 관한 배타권) 2. 상표에 관한 배타권은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상품, 저작물 또는 역무를 식별함으로써, 특히 다음 각 호의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 러시아연방 영역에서 생산, 판매신청, 판매, 전시회 및 견본시에서의 전시 혹은 그 밖

국가	정의규정
	의 양태로 민간교역에 도입되거나 해당 목적을 위하여 보관, 수송 혹은 러시아연방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상품의 라벨 및 포장을 포함한다)에 사용 2) 업무 수행 중 또는 역무 제공 중에 사용 3) 상품의 민간교역 도입에 관한 서류에 사용 4) 상품의 판매신청, 업무수행·역무제공 및 통지, 간판 및 그 밖의 광고에 사용 5) 인터넷상(도메인명 및 다른 어드레스 지정 수단을 포함한다)에서 사용 3. 식별을 위하여 상표등록된 상품 또는 그 유사상품에 대하여 그 사용 결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도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유사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	상표법 제2조 (정의 등) ③ 이 법률에서 표장에 관하여 ‘사용’이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표장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 제공 시에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양도 또는 대여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 4. 서비스 제공 시에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표장을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서비스 제공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서비스 제공 시에 제공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표시한 것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6. 서비스 제공 시에 제공받는 자의 해당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 7.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 행하는 영상면을 매개로 한 서비스 제공 시에 그 표장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광고, 가격표 또는 거래 서류에 표장을 표시하여 전시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표장을 표시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행위 9. 소리 표장은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상품의 양도나 인도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소리의 표장을 발하는 행위 10. 전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대한민국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정의규정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표 76] 국가별 상표의 사용 규정 비교

미국의 경우는 상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지 아니하고, ‘상거래에 사용(use in commerce)’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실제 사용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¹⁶¹⁾ 중국의 경우는 상표의 사용을 ‘사용하거나 기타 상업활동에서 사용’ 으로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밖의 다른 국가들 역시 ‘상업적 사용’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법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는 일본이 존재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정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조 제3항 제10호에서 ‘전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규정함으로써, 각 호에서 규정되지 못한 사항들을 정령(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사용 규정을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관점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사용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161)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표의 사용실적으로 인정하는 자료의 예시 등을 안내하고 있는 상표심사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정된 자료로서 상품의 포장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물론이며, 서비스표의 경우는 신문광고, 브로슈어, (식당용) 메뉴, 대중에게 공개된 보도자료, 서비스표가 인쇄된 레터헤드의 편지, 명함, 송장 등 사업과 관련된 문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경우 실연자들의 이름과 함께 공연 중인 사진, 서비스표가 수록된 광고물이나 TV 리스팅,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앱의 경우 해당 전자기기에서 앱이 구동되는 스크린 샷,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서비스표가 쓰이는 모습을 포착한 자료 등 서비스표와 서비스간 연관성이 문언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이나 서비스 제공 환경 상 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이 암시되거나 소비자들의 서비스 소비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에 비추어 연관성이 충분히 유추되는 경우에 적절한 사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서비스표의 사용 증거물, 플랫폼 관련 서비스표의 사용증거물, 자산관리 및 수익추적, 재정자문, 금융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관련 서비스표의 사용증거물도 사용실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표법 체계가 상이하긴 하나 다양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만 한다. 상표사용증거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 임소현(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미국 상표 사용증거물 가이드라인,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정책자료, 2019. 7. 22. 참조,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463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 권오상·노창희·이수연·이순환, 「방송통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8
- 김관식, 특허권 보호의 국제적 차이 및 법적 과제, 제21회 지재연 포럼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발표자료, 2008
- 김태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곁하여, 「경제규제와 법」제10권 제2호, 2017
- 박준석,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제54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13
- 유미특허법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1
- 윤선희, 발명의 정의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지식재산21」 특허청, 2002
- 임소현, 미국 상표사용증거물 가이드라인,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정책자료 2019. 7. 22.
- 전정화 외,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2018
-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2권 제1호, 2010
- 특허청, 「특실심사기준」, 2022
- 특허청, 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특허청 보도자료 2022. 7. 1.
- 특허청, 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가능, 특허청 보도자료 2021. 6. 21.
- 함영욱,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2
-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1991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better.go.kr>>